

10년투자 주식 1호 약관 변경사항

(2008.10.)

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

▣ 변경사유 : 장기주식형펀드(적립식)의 적격 기준 명시

▣ 신탁약관 변경 내용

— 현행과 변경(안)

현행	변경(안)
<p>제 1 조(목적등) ①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,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</p>	<p>제 1 조(목적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국내 주식에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37조(투자한도) ①자산운용회사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·운용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70%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~10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37조(투자한도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---- 단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~10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<u>(신 설)</u></p>	<p>부 칙(2008. 10 . 27)</p> <p>이 약관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</p>